



서울회생법원

제 1 부

결 정

정본입니다.

2022. 3. 29.

법원사무관 김제석



사 건 2020회합100189 회생
 채 무 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
 평택시 동삭로 455-12
 법률상관리인 정용원
 회생계획안제출자 관리인

주 문

관리인이 2022. 2. 25., 2022. 2. 28. 및 2022. 3. 3. 제출한 각 회생계획안은 관계 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채무자에 대하여 2021. 4. 15. 회생절차가 개시되자, 관리인은 2021. 6. 7.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&A를 추진하여 2022. 1. 10. 에디슨모터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(이하 통틀어 '인수자'라 한다)와 사이에 '인수자가 인수대금 304,858,000,000원으로 채무자의 신주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되, 인수자는 인수대금 중 계약당일 예치한 계약금 30,485,8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 274,372,200,000원은 위 내용을 반영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계좌



에 예치하기로 하고, 만일 인수자가 위 기간까지 나머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간경과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'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(이하 '이 사건 투자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그후 관리인은 2022. 2. 25.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위 인수대금 중 295,931,391,699원을 유일한 변제재원으로 하여 희생담보권자 및 희생채권자에 대한 동액 상당의 현금변제대상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.

다. 이에 이 법원은 2022. 2. 28. 위 2022. 2. 25.자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을 2022. 4. 1. 15:00으로 지정하였고, 관리인은 관계인집회기일의 지정 사실을 인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, 2022. 2. 28. 및 2022. 3. 3. 2회에 걸쳐 위 2022. 2. 25.자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누락된 첨부 서류를 보완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였다(이하 위 각 회생계획안을 통틀어 '이 사건 회생계획안'이라 한다).

라. 그런데 인수자는 위 관계인집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인 2022. 3. 25.까지 나머지 인수대금 274,372,200,000원을 전혀 예치하지 아니하였고, 관리인은 2022. 3. 28. 인수대금 예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수자에게 통지하였다.

마. 한편, 채무자의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2022. 3. 28. '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나,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되어 수행가능성이 없다'는 취지의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
2. 판단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채무자회생법'이라 한다) 제231조는 '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.'고 규정하면서, 제3호에서 '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'를 규정하고 있다.

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정한 인수대금의 정상적인 예치를 전제로 하여 오로지 위 인수대금만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, 인수자의 인수대금 예치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위 전제조건을 종국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제3호에 정한 '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'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

3. 결론

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에 의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3. 29.

재판장

판사

서경환



판사

이동식



판사

나상훈

